

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법률 제16081호, 2018.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30호, 2019. 12. 3. 공포, 2019. 12.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834호, 2019. 12. 24., 공포, 2019. 12.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위원회(임기 3년)의 구성·운영(안 제4조~제7조)

- 평가관련 심의 기구로 평가운영위원회(10명 이내), 평가 관련 전문적인 사항의 검토기구로 평가실무위원회(7명 이내) 설치함

나. 평가대상 및 주기 설정(안 제8조)

-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감리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주기를 2년으로 함다. 평가반 구성 및 평가 실시(안 제11조~제12조)

○ 평가반은 평가기관 소속 직원과 필요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무실 또는 현장 평가 실시라. 평가결과의 공개 등(안 제15조~제16조)

-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와 정보망에 공개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피해구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 shs4444@korea.kr
- 팩스 : 044-201-6823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전화 044-201-6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30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한국파라마운트(주)(최윤희, 신순주) ②주식회사 테코이코(최윤희, 안성희)

나. 전화번호 : ①02-784-8599 ②02-783-8599

2. 명칭 : 반응성 GCL차수재를 이용한 제방표면 차수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목구조물 보수보강(포장 보수제외) / 기타 구조물 보수보강

<기술의 요지>

COOH, PAA, HDTMA, CaOMgO를 함유하는 반응성 GCL(reactive geosynthetic clay liner)차수재를 방의 표면에 포설하고, 이의 포설 이음부를 벤토나이트로 처리하여 제방을 차수하는 공법

<범위>

COOH, PAA, HDTMA, CaOMgO를 함유하는 반응성 GCL차수재를 제방의 표면에 포설하여 제방을 차수하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531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해성건설주식회사(임채균), 주식회사 밀성산업건설(조석만)

나. 전화번호 : ①02-458-1994 ②02-546-7124

2. 명칭 : 회전롤러와 기류차단 실리콘 고무패드를 이용한 저취기 비굴착식 전체보수공법(RS공법)